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33
----------	-----

2019. 12. 16.(월)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육미선 의원 등 5인

나. 발의일자 : 2019년 11월 28일

다. 회부일자 : 2019년 11월 29일

라. 상정일자 : 2019년 12월 3일

-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육미선 의원)

가. 제안사유

○ 충북의 양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및 정착을 위하여 양성평등
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용어정의를 개정 및 추가함(안 제2조).
- 시행계획의 평가 포함(안 제6조).
- 양성평등위원회 기능에 양성평등 정책 평가 및 성주류화 조치 추진실적 점검사항 포함(안 제7조)
-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수 및 당연직 위원 확대(안 제8조).
 - 위원수: 20명→30명
 - 당연직 위원: 기획관리실장, 여성정책관 → 기획, 행정, 경제, 복지, 문화, 여성 등 업무 담당 실·국장
- 정기회 개최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확대(안 제10조).
- 실무위원회 구성(안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 (이강근 수석전문위원)

가. 제출배경

-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7년 기준 전국 시·도별 지역성평등지수 측정 결과에 따르면, 4개 등급 중 충북은 중하위권(3등급) 수준에 그치고 있음.
 - 특히 8개 분야별로 17개 광역시·도의 순위를 보면, 충북은 경제활동 분야만 우수하고 △의사결정 10위 △교육직업훈련 11위 △복지 8위 △보건 13위 △안전 10위 △문화·정보 10위로 성평등지수가 중하위권에 머물렀고,
 - 또한, 전국조사(2016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 62.6%가 여성이 불평등하다고 응답한 반면, 충북 조사(2018)에서는 응답자의 71.7%가 불평등하다고 응답함
-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15일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충청북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조치로 필요한 내용을 개정하고, 일부 문구 및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안 제2조(정의)에는 “성차별”, “성희롱”, “양성평등 관련 법령” 등 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규정함
- 안 제6조는, 5년 단위로 작성되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대해 그 결과를 평가하도록 하여 이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 시 피드백(feedback)을 통해 내용의 충실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고,
- 안 제7조는,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에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협력 및 평가 ▲충청북도 성 주류화 조치의 추진 실적점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음
- 안 제8조는, 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 위원수를 현행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 당연직 위원을 현행 기획관리실장, 여성정책관에서 기획, 행정, 경제, 복지, 문화, 여성 등의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개정함.
- 안 제10조 또한, 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정기회를 현행 연 2회에서 연 4회로 늘리고, 임시회 소집 조건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를 추가함
- 안 제11조는,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심의·조정·자문·협의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규정함
- 안 제12조는,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였음

- 안 제16조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제53조의2가 삭제됨에 따라, 법률 인용조항을 성인지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회계법」 제18조로 개정함
- ※ 「지방회계법」 제18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19조는, 도정 참여에 있어 양성평등 확보를 위해
 - 제3항에 “도지사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를 신설함
 - 이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것으로 타당함.
 -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 제22조는, 현행 제20조를 삭제하고, 성매매 범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규정하였고, 안 제23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안 제24조(여성의 복지증진), 안 제25조(건강증진), 안 제28조(양성평등 교육) 는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 안 제33조는, 기금 운용과 관련해 지원금을 현행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원토록 규정된 것을 삭제하여 필요에 따른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임 ※ 양성평등기금 조성액('19): 6,736,049천원

- 안 제42조는 조례에서 정한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및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임.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 구성, 회의 등 충청북도의 양성평등 강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과 일부 문구 및 내용을 정비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가 없음.
- 또한,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규정한 것으로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으며, 절차상 토론회, 조례안 예고 및 집행부 협의를 거친 바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육미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3
----------	-----

발의연월일 : 2019년 11월 28일
발의자 : 육미선, 박상돈, 최경천
박형용, 심기보, 이상욱

1. 제안이유

- 충북의 양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및 정착을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용어정의를 개정 및 추가함(안 제2조).
- 나. 시행계획의 평가 포함(안 제6조).
- 다. 양성평등위원회 기능에 양성평등 정책 평가 및 성주류화 조치 추진 실적 점검사항 포함(안 제7조).
- 라.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수 및 당연직 위원 확대(안 제8조).
 - 위원수: 20명→**30명**
 - 당연직 위원: 기획관리실장, 여성정책관 → 기획, 행정, 경제, 복지, 문화, 여성 등 업무 담당 실·국장
- 마. 정기회 개최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확대(안 제10조).
- 바. 실무위원회 구성(안 제11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조례안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9- 93호
- 다. 협의 : 여성가족정책관
- 라. 비용추계 : 첨부 제외 사유서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양성평등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으로 한다.

제2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성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여성 또는 남성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5. “양성평등 관련 법령”(이하 “관련 법령”이라 한다)이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인권보장과 복지증진, 사회참여 확대 등에 관하여 규정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도민”을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를 “관련”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수립·시행”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로 한

다.

제7조제2호 중 “조정 및 협력”을 “조정·협력 및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충청북도”를 각각 “도”로, 같은 호 중 “제도 지원”을 “조치의 추진 실적 점검 및 제도개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를 “양성평등에 관하여”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20명”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 행정, 경제, 복지, 문화, 여성 등의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1.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3.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10조제2항 중 “2회”를 “4회”로, “경우에”를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하고, 제11조와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실무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심의·조정·자문·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중전의 제11조)의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 를 “(위원의 해촉)” 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 를 “해촉”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위촉 해제를” 을 “해촉을” 로 한다.

제12조 앞에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을 삭제하고, 제14조(중전의 제12조) 앞에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을 삽입한다.

제14조(중전의 제12조) 제2항 중 “도지사는” 을 “도지사는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로 한다.

제16조(중전의 제14조) 중 “제53조의2” 를 “「지방회계법」 제18조” 로 한다.

제18조(중전의 제16조) 중 “관계” 를 “관련” 으로 한다.

제19조(중전의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제26조 및 제27조로 하고,
제23조부터 제35조까지를 각각 제29조부터 41조까지로 한다.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등) ① 도지사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피해자의 상담과 자활지원 및 가해자의 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이 보장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모·부성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여성의 복지증진) ① 도지사는 생애주기 및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장애인·한부모·미혼모·이주민·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5조(건강증진) 도지사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8조(양성평등 교육) ① 도지사는 가정, 학교, 영유아시설, 사회교육시설, 기업 등에서 양성평등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 자치연수원에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및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과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종전의 제22조)의 제목 “(양성평등주간 행사)” 를 “(양성평등주간 행사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따른” 을 “따른 여성

의 날 및” 으로 한다.

제25조 앞에 “제4장 양성평등기금” 을 삭제하고, 제31조(종전의 제25조) 앞에 “제4장 양성평등기금” 을 삽입한다.

제33조(종전의 제2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3조 앞에 “제5장 양성평등정책 기관·시설 및 단체 등의 지원” 을 삭제하고, 제39조(종전의 제33조) 앞에 “제5장 양성평등정책 기관·시설 및 단체 등의 지원” 을 삽입한다.

제41조(종전의 제35조) 중 “제17조제2항” 을 “제19조제2항” 으로 한다.

제6장에 제36조를 제43조로 하고,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범위·위탁의 방법·절차 등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의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양성평등기본법」 및 <u>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u>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u>“성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여성 또는 남성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u> 4. <u>“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u>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u>

	<p><u>행위</u> <u>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u> 5. <u>“양성평등 관련 법령” (이하 “관련 법령” 이라 한다)이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인권보장과 복지증진, 사회참여 확대 등에 관하여 규정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u></p>
<p>제3조(도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도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도민은 <u>관계 법령</u>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p>	<p>제3조(도민의 권리와 의무) ① ---- <u>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u>----- ----- ----- ----- ② ----- <u>관련</u> ----- ----- ----- -----</p>
<p>제6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등 수립) ① · ② (생략)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u>수립 · 시행</u>하여야 한다.</p>	<p>제6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등 수립)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수립 · 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u>-----.</p>
<p>제7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생략)</p>	<p>제7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 ----- ----- ----- 1. (현행과 같음)</p>

<p>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u>조정 및 협력</u>에 관한 사항</p> <p>3. 충청북도 양성평등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p> <p>4. 충청북도 성 주류화 <u>제도 지원</u>에 관한 사항</p> <p>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2. ----- <u>조정·협력 및 평가</u>-----</p> <p>3. <u>도</u> -----</p> <p>4. <u>도</u> ----- <u>조치의 추진 실적 점검 및 제도개선</u>-----</p> <p>5. ----- <u>양성평등에 관하여</u> -----</p>
<p>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u>2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생략)</p> <p>③ 기획관리실장, 여성정책관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u>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p> <p>④·⑤ (생략)</p>	<p>제8조(위원회 구성) ① ----- <u>30명</u>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 행정, 경제, 복지, 문화, 여성 등의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p> <p>1. <u>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p> <p>2. <u>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u></p> <p>3. <u>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u></p> <p>④·⑤ (현행과 같음)</p>
<p>제10조(회의) ① (생략)</p> <p>② 정기회는 연 <u>2회</u>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u>경우에</u> 소집한다.</p> <p>③ (생략)</p>	<p>제10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4회</u> ----- <u>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u> ---.</p> <p>③ (현행과 같음)</p>

<p><신 설></p>	<p>제11조(실무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심의·조정·자문·협의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② 실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p> <p>③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신 설></p>	<p>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p> <p>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p> <p>③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p>
<p>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p>	<p>제13조(위원의 해촉) ----- ----- ----- 해촉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해촉을 -----</p>

때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삭 제>
제12조(성 주류화 조치 지원) ① (생략) 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4조(성 주류화 조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 -----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 (생략)	제15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신 설>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제14조(성인지 예산 및 결산)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제53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성인지 예산 및 결산) ----- ----- 「지방회 계법」 제18조----- ----- -----.
제15조 (생략)	제17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제16조(적극적 조치) 도지사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적극적 조치) ----- ----- ----- ----- 관련 ----- -----.
제17조(도정 참여 확대) ①·② (생략) <신 설>	제19조(도정 참여 확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생 략)	제20조 (현행 제18조와 같음)
제19조 (생 략)	제21조 (현행 제19조와 같음)
제20조(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 등) ① 도지사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성폭력 피해자와 가정폭력 피해자의 상담과 자활지원, 가해자의 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삭 제>
제21조 (생 략)	제26조 (현행 제21조와 같음)
<신 설>	제22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등) ① 도지사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피해자의 상담과 자활지원 및 가해자의 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양성평등주간 행사) 도지사는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양성평등주간 행사 등) ----- ----- 따른 여성의 날 및 ----- ----- -----.
<신 설>	제23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이 보장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p><u>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p> <p><u>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모·부성 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u></p>
<신 설>	<p><u>제24조(여성의 복지증진) ① 도지사는 생애주기 및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u></p> <p><u>② 도지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장애인·한부모·미혼모·이주민·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u></p>
<신 설>	<p><u>제25조(건강증진) 도지사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p>
<u>제23조·제24조 (생 략)</u>	<u>제29조·제30조 (현행 제23조 및 제24조와 같음)</u>
<u>제4장 양성평등기금</u>	<삭 제>
<u>제25조·제26조 (생 략)</u>	<u>제31조·제32조 (현행 제25조 및 제26조와 같음)</u>
<p><u>제27조(기금운용계획 및 관리) ①·② (생 략)</u></p> <p><u>③ 제26조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연도</u></p>	<p><u>제33조(기금운용계획 및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u></p> <p><삭 제></p>

<p><u>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u></p>	
<p><u><신 설></u></p>	<p><u>제28조(양성평등 교육) ①</u> 도지사는 가정, 학교, 영유아시설, 사회교육시설, 기업 등에서 양성평등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p> <p><u>②</u> 도지사는 도 자치연수원에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p> <p><u>③</u> 도지사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및 그 밖의 연수교육과정에서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과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u>제28조 ~ 제32조 (생 략)</u></p>	<p><u>제34조 ~ 제38조 (현행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와 같음)</u></p>
<p><u><신 설></u></p>	<p><u>제4장 양성평등기금</u></p>
<p><u>제5장 양성평등정책 기관·시설 및 단체 등의 지원</u></p>	<p><u><삭 제></u></p>
<p><u>제33조·제34조 (생 략)</u></p>	<p><u>제39조·제40조 (현행 제33조 및 제34조와 같음)</u></p>
<p><u>제35조(단체 등 지원)</u> 도지사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도내 소재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와 <u>제17조제2항</u>에 따른 민·관 거버넌스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p>	<p><u>제41조(단체 등 지원)</u> ----- ----- ----- ----- ----- <u>제19조제2항</u>----- ----- -----</p>

<p>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 -----.</p>
<p><u><신 설></u></p>	<p><u>제5장 양성평등정책 기관·시설 및 단체 등의 지원</u></p>
<p><u><신 설></u></p>	<p><u>제42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범위·위탁의 방법·절차 등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u></p>
<p><u>제36조 (생 략)</u></p>	<p><u>제43조 (현행 제36조와 같음)</u></p>

관계법령 발췌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제25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①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모·부성권의 보장 등에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높여 나가야 한다.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3조(복지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나이 등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건강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6조(양성평등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에서부터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연수기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연수교육 과정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여성의 날과 양성평등주간)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제4항제1호

○ 첨부제외 사유

- 이 조례에서 시행계획의 평가,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의 개정은 비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며, 비용발생 요인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피해자의 상담과 자활지원 및 가해자의 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제21조), 모·부성의 권리 보장 지원(제22조), 여성복지증진(제23조), 건강증진(제24조), 양성평등 교육 지원(25조) 등은 지원 규모·대상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